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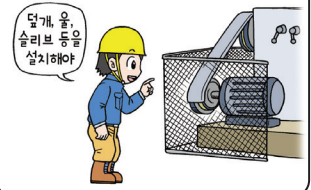


안전동행 지원사업, 안전한 작업으로 시작하세요.

기계·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

원동기·회전축 등의 위험방지

- ▶ 원동기·회전축·기어·폴리·플라이휠·벨트 및 체인 등 부위에 덮개·울·슬리브 및 건널다리 설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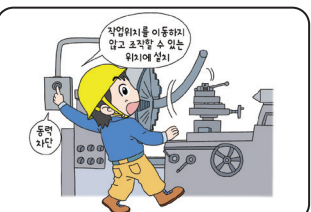
방호장치의 해체 금지

- ▶ 기계·설비에 대한 방호장치 미설치, 임의의 해체 또는 사용정지 금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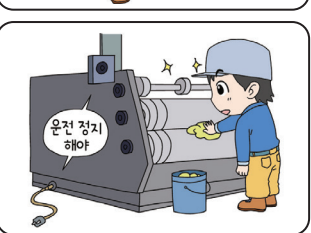
동력차단장치

- ▶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·클러치 및 벨트 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 설치



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

- ▶ 정비·청소·수리 등 작업 시 해당 기계의 운전 정지
- ▶ 기동장치에 잠금조치(Lock Out) 후 열쇠를 별도 관리 또는 표지판(Tag Out) 설치
- ▶ 작업과정에서 기계의 불시가동이 우려될 경우 작업지휘자 배치



사고다발 위험설비 안전작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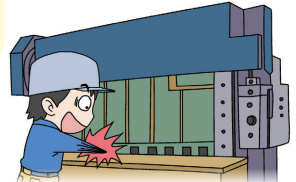
프레스

금형 교체 및 조정작업 시
안전블록 사용



전단기

크기가 작고 폭이 좁은
소재는 수공구 사용



사출성형기

안전문 연동장치
정상 작동 확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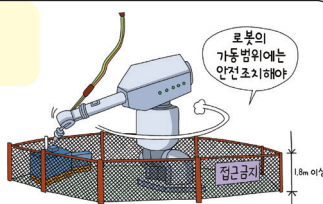
공작기계(선반, 밀링 등)

말릴 위험이 있는 옷,
장갑 등 착용 금지



산업용로봇

로봇 가동범위 내
접근 금지 조치



컨베이어

이상 발생 시 전원 차단 및
운전 중 이물질 제거 금지





보조금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됩니다.

부정수급 행위 확인 시
공단 클린사업장조성사업
홈페이지 (<https://clean.kosha.or.kr>)
부정당행위 신고게시판 또는 1544-3088로
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부정수급이란?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**중대한 범죄**로서 적발시 부정수급액의 반환, 추가징수, 참여제한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.

부정수급 주요사례

자부담금 대납(페이백)
공급업체와 결탁하여 보조금 외의 자부담금을 되돌려 받는 경우

거짓·부정한 행위
선 투자방식으로 이미 구입한 물품을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지원신청하는 경우

추가물품, 공사 등 무상제공
지원품목 이외의 물품이나 공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

허위계산서 발행
실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계산서 발행하여 그 차액을 편취

부정수급 시 추가징수 및 보조금 지급제한 조치

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(산업재해예방활동의 보조·지원)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의2(보조·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)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(보조·지원의 환수와 제한)

처분조치 부정수급액 최대 5배 추가징수 및 최대 5년간 지급제한

위반 사항	처분 조치
제1호 거짓·부정	추가징수 5배, 지급제한 5년
제2호 폐업·파산	추가징수 없음, 지급제한 3년
제3호 임의매각·훼손·분실	추가징수 2배, 지급제한 3년
제4호 목적 외 사용	추가징수 2배, 지급제한 3년
제5호 설비 국외 이전	추가징수 2배, 지급제한 3년
제6호 중대재해발생	추가징수 없음, 지급제한 3년
제3~5호 경미한 부주의	추가환수금액의 1/20 이내
제3~5호 위반 후 5년 이내 같은 사유 위반	추가징수 5배
제2~6호 위반 후 5년 이내 같은 사유 위반	지급제한 5년